

#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고서

2018. 4. 1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4월 6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8년 4월 12일

라. 상정일자 : 제20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4. 16.)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의 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를 구의회 동의를 받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상시설

시설명(가칭)	위 치	규 모	정원
구립 모랫말데이케어센터	도림로 41 (도림동 205-23)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5,6층〉	232.62㎡ (70평)	21명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일상생활, 일상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운영방법 :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 운영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지원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원금(85%)과 이용자 본인부담금(15%)으로 운영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가칭)구립모래말데이케어센터는 영등포구 도영로 41(도림동 205-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32.62㎡(70평), 정원 2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야간 보호시설로서
-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또는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보호가 필요한자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와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 현재 우리구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3,299명으로 영등포구 인구 전체의 14.5%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또한, 2014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로 노인요양 등급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욕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은 총 11개소로 구립 8개소, 사설3개소이며 이 중 2개 구립시설은 얼마 전 2018.4.1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17.12월 현재 우리구 거주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 등급자가 3,290명으로 이중 2,684명 81.5%만이 재가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아직도 6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신 방문요양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향후에는 재가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장기요양 수요·공급 현황(2017.12월 현재)

- 어르신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20년 (추계)	2025년 (추계)	2030년 (추계)
전체인구	426,876	421,436	406,779	368,550	383,869	375,013	366,958
노인인구 (인구대비%)	45,417 (10.6%)	49,184 (11.6%)	51,186 (12.5%)	53,299 (14.5%)	60,533 (15.7%)	75,113 (20.0%)	88,645 (24.1%)

- 장기요양 등급 현황

(단위 : 명)

등급판정 신청자	등급 인정자						등급위 A,B,C	판정 탈락자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4,348	3,290	371	469	1,102	1,066	282	195	863

- 급여 이용자

(단위 : 명)

노인인구수	요양등급자	시설별 이용자수			미이용자	비고 (이용률)
		합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53,299	3,290	2,684	363	2,321	606	81.5%

- 재가 요양서비스 공급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시설수	173	11	98	65	2
이용인원	2,306	308	1,763	201	34
시설정원		282			

○ 구립모래말데이케어센터는 2018년 7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으며 이곳 시설은 노후한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시설 이용자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가복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축적한 전문기관에 시설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운영 하는 것이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에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시설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 366 호
----------	---------

제출연월일 : 2018.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민간위탁 목적

- 노후한 구립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데이케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함.

## 2. 민간위탁 내용

- 대상시설

시설명(가칭)	위 치	규 모	정원
구립 모랫말데이케어센터	도영로 41 (도림동 205-23) <모랫말어르신복지센터 5,6층>	232.62㎡ (70평)	21

-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1~5등급)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서비스 내용

- 취미, 오락, 운동, 언어·작업·물리치료적 훈련 등 일상생활, 일상동작 훈련 서비스
-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이동서비스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 3.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18. 4월: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
- 2018. 4월: 일상감사 의뢰
- 2018. 5월: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
- 2018. 6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18. 6월: 위·수탁 협약체결
- 2018. 7월: 위·수탁 사무 인수인계

### 4. 민간위탁 소요 예산

- 민간위탁금 지원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지원금(85%)과 이용자 본인부담금(15%)으로 운영됨.

### 5.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 질 향상
-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후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지역자원 개발·연계가 용이하여 나눔 복지 확산 및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
-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인력운영과 사업추진의 효율성 증대, 운영비용 절감에 기여

### 6.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